

의안번호	2212547
의 퇴 인	박용갑의원
회 답 일	2025.11.24.
추계번호	25B4685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지하안전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150개 지방자치단체에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4억 5,000만원, 2031년 9억원 등 향후 5년 동안 40억 5,000만원(연평균 8억 1,0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지방지하안전위원회 (안 제12조)	450	900	900	900	900	4,050	810

주: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국토교통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추계한 것으로, 실제 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위원구성·회의 운영 등에 따라 추계값은 달라질 수 있으며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의2 (전문인력의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반침하 예방과 지하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하안전관리관련기관”이라 한다)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제량규정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양성기관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의무규정
2	안 제6조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제2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수립 등)	3. <u>지반침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하안전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u> 4. <u>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및 기술·장비 등의 연구·개발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u>	
3	안 제11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자문단을 둘 수 있음 3. <u>지하안전 기술·장비 및 기준의 연구·개발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u> 3의2. <u>지하안전 전문인력 양성체제 구축 및 산학 협력 및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우수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사항</u>	재량규정
4	안 제12조 (지방지하안전위원회)	<u>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안전관리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각 시·도 지하안전위원회와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함(제1항)</u>	의무규정
5	제13조 (지하안전에 관한 기술·장비 및 기준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지하안전에 관한 기술·장비 및 기준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6	안 제13조의3 신설 (지하안전 측정기기·장비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승인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형식승인대행기관을 지정하여 형식승인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제1항) 1.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출 것 3. 측정기기·장비를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등 독립성을 갖출 것	재량규정
7	안 제13조의4 신설 (지하안전 측정기기·장비의 검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 및 장비의 제작·수입 또는 설치(이하 “제작등”이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는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장비(제13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형식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에게 지하안전관리 용도로 제공하려면 형식승인한 내용대로 구조·규격 및 성능 등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검정(檢定)을 받아야 함.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이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검정·교정을 받은 측정기기·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장비에 대하여는 검정을 면제함(제1항)	
		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장비의 제작등을 업으로 하는 자로부터 측정기기·장비를 제공받아 지하안전관리 용도로 사용하는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교정의 유효기간(이하 “검정유효기간”이라 한다) 만료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국토교통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u>검정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음(제2항)</u>	의무규정 재량규정
8	안 제13조의5 신설 (지하안전 측정기기·장비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의4에 따른 검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하안전 측정기기·장비를 검정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검정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9	안 제22조의2 (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은 지하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에게 주변 지반에 대한 보수·보강 등의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음. <u>다만, 「지하수법」 제9조의 2제1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한 유출지하수 또는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이용으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제1항 단서 신설)</u>	재량규정
10	안 제24조제4항 신설 (지하안전평가 등의 대행)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의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점검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제4항 신설)	의무규정
11	안 제33조 (지하안전평가등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하안전관리 강화와 지하안전평가 품질 보장을 위하여 적절한 수준의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이 경우, 적정 대가 지급을 위한 지하안전평가등의 인건비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신설)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2	안 제34조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 지하수의 수량 등에 대하여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u>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u> 통보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u>분기마다</u>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함. 다만,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안전점검 결과를 검토하고, <u>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의</u> 의 심의를 거쳐 지반침하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음(제2항)	의무규정 재량규정
13	안 제35조 (지반침하위험도평가 및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등)	<u>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u> 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고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및 <u>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u> 지반침하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지조사단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14	안 제38조 (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시설물에 의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거나 보수·보강 또는 제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음. 다만, 「지하수법」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한 유출지하수 또는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이용으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장관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제1항 단서 신설)	재량규정
15	안 제46조 (사고조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u>제1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 및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u> 를 구성하여 조사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u>제1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 및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지방지하사고조사위원회</u> 를 구성하여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여야 함(제4항)	의무규정
16	안 제47조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연구·조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안전정보체계를 구축·운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영하여야 함(제1항) 2의2.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 결과 2의3.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변경·해제·고시, 제37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안전확보, 제40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정비계획 등 2의4. 제4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및 지방지하사고조사위원회 조사 및 권고·건의·조치 결과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유무	비고
1	안 제3조의2 (전문인력의 양성)	×	• (제3호)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하안전관리관련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런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방법과 내용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고, 전문인력 양성이 현행 법령에 따른 신규·보수교육 외의 방법으로도 추진될 수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하안전관리관련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한 이후에 교육훈련 비용 지원 규모를 추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시점에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다만, 현재, 동법 시행령 제15조¹⁾ 및 시행규칙 제5조²⁾에서는 지하안전평가를 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 등의 자격과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교육³⁾이 시행된 바 있음

1) 제15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비	비고															
2	안 제6조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 계획의 수립 등)	×	• (제3호) 개정안은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에 ‘지하안전 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및 기술·장비 등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연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⁴⁾ 시·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따라 시·도 관리계획⁵⁾을 수립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관리계획⁶⁾을 수립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개정안에 따른 각 기관별 지하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 지하안전관리 정책·기술·장비 등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획이 수립될 사항으로, 이는 국가, 시·도, 시·군·구의 기술개발 등 관련 기본계획, 집행 계획 및 관리계획의 수립 내용과 추진방식에 따라 관련 내용과 소요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시점에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3	안 제11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	—	• (미대상)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내 운영 중인 지하안전관리 자문단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으로, 추가재정소요는 미발생할 것으로 예상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구 성</th> <th>자문위원</th> </tr> </thead> <tbody> <tr> <td>1</td> <td>제1기 자문단(‘18년 ~ ’20년)</td> <td>15명</td> </tr> <tr> <td>2</td> <td>제2기 자문단(‘20년 ~ ’22년)</td> <td>15명</td> </tr> <tr> <td>3</td> <td>제3기 자문단(‘22년 ~ ’24년)</td> <td>15명</td> </tr> <tr> <td>4</td> <td>제4기 자문단(‘24년 ~ ’26년)</td> <td>18명</td> </tr> </tbody> </table>	구 분	구 성	자문위원	1	제1기 자문단(‘18년 ~ ’20년)	15명	2	제2기 자문단(‘20년 ~ ’22년)	15명	3	제3기 자문단(‘22년 ~ ’24년)	15명	4	제4기 자문단(‘24년 ~ ’26년)	18명
구 분	구 성	자문위원																
1	제1기 자문단(‘18년 ~ ’20년)	15명																
2	제2기 자문단(‘20년 ~ ’22년)	15명																
3	제3기 자문단(‘22년 ~ ’24년)	15명																
4	제4기 자문단(‘24년 ~ ’26년)	18명																
4	안 제12조 (지방지하안전위원회)	○	• (추계)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현행 지방지하안전위원회 운영 실적자료를 참고하여 추계															
5	제13조 (지하안전에 관한 기술·장비 및 기준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	• (제3호)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하안전에 관한 장비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그런데 지하안전에 관한 장비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될 사항으로,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또는 정부의외 자의 출연금, 기업 기술개발비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어 현시점에 지하안전에 관한 장비 연구·개발 사업을 위해 협약을 체결하게 될 기관 혹은 단체, 협약의 내용, 재원조달 방법 등이 불확정적이므로 관련 비용을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질·지질 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② 책임기술자는 지하안전평가를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8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지하안전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책임기술자의 감독하에 지하안전평가를 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해**

연번	조·항(조제목)	추진부	비고
6	안 제13조의3 신설 (지하안전 측정기기·장비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	• (제3호) 개정안은 지하안전 측정기기·장비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하안전 측정기기·장비에 대한 검정 및 재검정을 의무화하며,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대행기관 등은 형식승인업무 및 검정제도 운영, 관련 시설·장비 구축·유지 관리, 행정·기술인력 확보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며, 검정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 국가가 비용을 보전하거나 수수료 수입이 감소할 수 있음. 그런데 형식승인·검정 대상 장비의 종류와 보급 규모, 검정·재검정 주기, 검정 수요, 검정 업무의 위탁 여부, 검정 수수료 부과기준 및 채원부담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하위법령 등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므로 현시점에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안 제13조의4 신설 (지하안전 측정기기·장비의 검정 등)		
	안 제13조의5 신설 (지하안전 측정기기·장비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7	안 제22조의2 (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	• (제3호) 개정안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발생한 유출지하수 또는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이용으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승인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부장관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재정이 수반되는 조치를 취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긴급 안전조치의 내용과 방법, 재원분담 등에 관한 사항이 불확정적이므로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안 제38조제1항 (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8	안 제24조제4항 신설 (지하안전평가 등의 대행)	×	• (제3호) 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안전평가 등의 대행 계약을 체결할 때 적정 대가지급을 위한 인건비 기준을 정비하는 경우, 해당 기준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실시되고, 그 결과 완성된 기준에 따라 인건비 인상 등이 이뤄지면, 대행 계약 시 지불하여야 하는 인건비 등의 비용이 인상될 수 있음. 그런데, 현재 이러한 산정기준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안이 마련되지 않았고, 대행계약 체결 내용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여부가 확정될 것이므로 현시점에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안 제33조 (지하안전평가등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약 한다.

2) 제5조(책임기술자 등의 교육훈련)

- ① 영 제15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지하안전 분야의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말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 분야의 교육훈련기관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교육원
-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은 70시간 이상으로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3년 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은 21시간 이상으로 한다.

연번	조·항(조제목)	추경·부	비고
9	안 제34조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	• (제3호) 개정안은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의 범위에 지하수의 수량을 추가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던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분기마다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정기점검 및 실태점검의 내용과 횟수 증가로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 확보, 점검체계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그런데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안전점검의 방법과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해질 사항으로 현 시점에 그 내용과 비용 수준을 특정하기 곤란하고, 정기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소요비용이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며, 안전관리 실태점검 비용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해당 지하시설물 대상 규모 등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시점에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7) 및 별표 3에 따라 실시되고 있음
10	안 제35조 (지반침하위험도평가 및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등)	×	• (제3호) 개정안은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고시권자에 국토교통부장관을 추가하고,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지반침하위험도 평가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을 지정·고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안전관리원 등으로 구성된 현지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현지조사단 파견 및 조사 수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그런데 중점관리대상 지정 예상 물량, 현지조사단 구성 및 인력 규모, 국토안전관리원의 역할 범위, 조사방식 및 지역별 업무량 등이 불확정적이므로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11	안 제46조 (사고조사 등)	－	• (미대상)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와 지방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실제 지반침하 피해가 발생하여 사고조사가 필요한 경우 구성·운영되는 위원회로, 개정안은 지반침하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중앙·지방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사고조사를 의무화한 내용이며, 기존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처리가능한 사항으로 추가재정소요와는 관계가 없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정 및 그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연번	조·항(조제목)	추진부	비고
12	안 제47조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운영)	-	• (미대상)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하안전정보체계에 지하안전평가, 착공후지하안전조사 등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 평가 결과 등의 사항을 추가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행 지하안전정보체계에 해당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추가제정소요는 불요하다는 입장임 - 참고로, 현행 「지하안전정보체계」 사업개요는 [참고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음

3) [표 1] 지하안전분야 교육 실적: 2020~2024년

(단위: 명)

구분	국토안전관리원	건설기술교육원	(재)건설산업교육원
2020	26	877	305
2021	53	922	947
2022	10	483	657
2023	77	569	502
2024	100	660	718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 4) 법 제6조(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5) 법 제7조(시·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시·도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도 지하안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 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6) 법 제8조(시·군·구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시·도 관리계획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시·군·구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군·구 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지하시설물의 종류 및 주변 지반의 범위,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방법 및 주기]

안전점검	세부내용
지반침하 육안조사	연 1회 이상 실시
공동(空洞)조사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통한 공동(空洞)조사: 종전 조사 완료일을 기준으로 매 5년 마다 1회 이상 실시

자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른 추계대상은 현재 지방지하안전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 150개 지방자치단체(1개 시·도 및 149개 시·군·구)가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소요비용으로 신규 설치되는 위원회 수에 위원회 운영비용을 곱하여 추산함
- (물량) 추계기간 중 첫 2년 동안 150개 지방자치단체에 균등하게 설치되는 것으로 가정함
 - 시·군·구 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운영현황에 관한 정보가 부재하므로, 시·도 기준과 동일한 운영방식(민간 위원 10인, 연 2회 개최)을 준용하는 것으로 가정함
- (위원회 운영비용) 위원회 운영비용은 회의참석 사례금으로 민간위원 10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회의당 300만원 소요 예상
 - 회의참석 사례금(안전 검토비 등 포함)은 1건 개최 시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⁸⁾
 - － 이때, 회의참석 사례금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이상의 가정에 따라 150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지하안전위원회가 설치·운영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이 추계됨

8)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전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하며,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내로 편성(기획재정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표 2] 지방지하안전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신규) 설치 지방자치단체 수(개소)	75	75	—	—	—	150
(누적) 설치 지방자치단체 수(a, 개소)	75	150	150	150	150	—
연간 개최일수(b, 회)	2	2	2	2	2	—
위원회운영비용 (c, 백만원/회당)	3	3	3	3	3	—
합계 (a×b×c, 백만원)	450	900	900	900	900	4,050

주: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국토교통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추계한 것으로, 실제 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위원구성·회의 운영 등에 따라 추계값은 달라질 수 있으며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IV. 부대의견

-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국토교통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추계한 것으로, 실제 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위원 구성·회의 운영 등에 따라 추계값은 달라질 수 있으며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문지은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assembly.go.kr

[참고자료 1]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 사업개요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 시스템 개요

- 지하안전법에 따라 지하개발사업 시행 시 거쳐야 하는 지하안전평가 등에 대한 행정지원과 지하안전관리 정책 활용, 지반침하 자료·통계 관리를 위한 시스템

□ 주요기능

- 지하안전평가, 소규모지하안전평가, 착공후지하안전조사 관리
- 지하안전점검 관리
-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관리
- 지하안전계획수립 관리
- 지반침하사고 관리

< JIS 구성도 >



□ 사업비 : 2025년 6.15억원

- 시스템유지관리비(2.24억원), 시스템 위탁운영비(3.24억원), 시스템기능개선비(67백만원)

[참고자료 2] 지방지하안전위원회 설치·운영 현황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단위: 개, 회)

구분	설치 지방자치단체 수	개최 횟수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시·도 (17)	16	14	18	18	13	63
시·군·구 (226)	79	38	53	65	71	227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